

# 중소기업 *focus*

##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파산·간이회생제도(2)

### - 간이회생제도의 개정(안) 주요내용 -

발간주제 27호 : 법인파산제도의 절차와 유의사항  
28호 : 간이회생제도의 개정(안)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및 회생을 위한 ‘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’의 도입을 통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2015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임

# 1

### 하나. 법인회생제도의 개요

#### □ 법인회생제도의 개념과 목적

법인(기업)회생제도	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의 직전까지 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폐업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의 회생을 법원이 도와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
법인(기업)회생제도의 목적	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회생시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사회적 경제손실이 크고 채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 모두 손해가 되는 입게 되므로,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과 채무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함

#### □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의 도입 배경

-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전문 법률 서비스이나 중소기업들의 이해부족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사례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
  - 기술력과 영업력을 가진 회생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운영자금, 설비자금 등 자금의 부족으로 회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, 금융기관의 각종 거래 제한과 회생인가 이후에도 계속 하향 조정되는 신용등급도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
- 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의 조기 진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,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 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중도 폐지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

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개선은 ① 회생절차 초기에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과 대안의 제시 ② 회생절차 비용(신청·절차(조사위원 보수))의 절감 ③ 회생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

☞ **현행법상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문제점**

문제점	영향
-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업가치가 적거나 재배치 할 인적·물적자원이 부족 ·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회생절차에 대한 무관심 ·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무리한 회생계획안 수립	- 회생절차의 목표 달성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 (회생가능성 낮음)
-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준비 부족	- 적기에 회생신청을 하지 못함
-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단일구조	- 다소 복잡한 절차 및 과다 비용 소요

○ **회생전문가 활용을 위한 재정능력이 취약하고, 적절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회생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**

- 2011년도에는 1390개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1089개 기업에 대해서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중 552개 기업이 중도 폐지됨
- 최근 5년간 신청 대비 회생계획 인가율은 30%,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종결기업(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한 기업)은 10% 수준

## 2. 개정안 주요내용

□ **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따른 ‘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’ 기본 내용**

-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음
-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
  -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/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였으며
  -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하여 평균 2,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음
- 또한 회사가 파산절차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재해보상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**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(안 제50조)**

<p>☞ <b>현행법상의 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법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함에 따른 절차의 지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이 거의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됨</li> </ul> </li> <li>※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, 주주 등에게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절차임</li> </ul>
<p>☞ <b>개정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</li> <li>※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가능</li> <li>- 개정안은 채권자·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 개사결정 이전에</li> </ul>

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절차진행의 신속성 도모			
구 분	법정 최대기간	평균 소요기간	개정안 목표
소요기간	1년7개월	약 9개월	약 6개월

현행법상 통상적 중소기업

회생절차 : 신청 →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(또 팔적중지명령) →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→ 개시결정 → 채권자 채무확정 →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→ 1회 관계인집회 → 회생계획안 제출 → 2, 3회 관계인집회 →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→ 회생계획 수행 → M&A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& 파산선고

□ 관계인설명회 신설(안 제98조의2)

<p><b>☞ 현행법상의 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/3 이상의 동의를 요하여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음</li> </ul>
<p><b>☞ 개정안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안은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/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1/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</li> <li>· 소액채권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자 과반수 요건을 추가함</li> </ul>

□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(안 제293조의7)

<p><b>☞ 현행법상의 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법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균 2,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채무자의 부담가중</li> <li>※ 조사위원 :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</li> </ul>
<p><b>☞ 개정안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안은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이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절차비용을 감소</li> <li>※ 관리위원 :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, 조사위원에 대한 업무수행의 평가와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,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</li> </ul>

심리절차 개선 전	심리절차 개선 후
<p>① 재산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사위원 선임 및 조사보고서 제출 (채무자가 조사위원 보수 부담)</li> <li>·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(형식적)</li> </ul> <p>② 관계인집회/회생계획안 심리단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1회 관계인집회 : 조사보고서 내용 등 심리</li> <li>· 제2~3회 관계인집회 : 회생계획안 심리/의결</li> </ul>	<p>① 재산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법원)조사위원 선임 생략 또는 보완</li> <li>· (중기청)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지원</li> </ul> <p>⇒ ② 채권자들과 회생계획안의 조기 협상</p> <p>③ 관계인집회/회생계획안 심리 단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1~3회 관계인집회 병합 심리(사전회생 계획안 제출시) 또는 절차 간이화 추진</li> </ul>

□ 간이회생절차 신설(안 제293조의2)

<p><b>☞ 현행법상의 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이파산의 요건이 부채규모가 5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</li> </ul>
<p><b>☞ 개정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설절차의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(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 30억원 이하로 적용)</li> </ul>

□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 단축(안 제293조의9 제1항)

<p><b>☞ 현행법상의 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법은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회생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킴</li> </ul>
<p><b>☞ 개정안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안은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(단,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가 3개월에 1회 이상 도래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)</li> </ul>

□ 임금 등 채권 우선변제

<p><b>☞ 현행법상의 문제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나</li> <li>-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·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관받아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분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</li> </ul>
<p><b>☞ 개정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</li> </ul>

□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에 기각되는 경우

기업회생 기각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때</li> <li>- 기업회생 절차가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</li> </ul>
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전 기각방지를 위한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순환운영자금 확보 및 사업부별, 상품별 제조원가 분석</li> <li>- 절차신청 후 지속적인 영업의 제한 또는 방해요소 검토</li> <li>- 채권자 협상에 필요한 자산매각계획과 신청전 사전 협의가능성 검토</li> <li>- 단기·장기사업계획수립 및 분식 소명자료 준비</li> <li>- 신청전후 자금 운영계획과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</li> <li>- 기존의 압류나 가압류 재산의 해지가능성과 방법 및 시기결정</li> </ul>
기업회생절차 개시전 주요 기각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</li> <li>-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준비나 소명이 허술하거나 불명확한 경우</li> <li>- 회사의 운영이 불확실한 경우</li> <li>- 향후 영업이익률이 작거나 적자로 판단되는 경우</li> <li>- 경매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</li> </ul>

□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 절차의 차이점

구분	회생절차	파산절차
신청가능 자	· 채무자 회사의 대표 · 채권자 또는 주주	·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· 채권자
절차의 원인	· 파산이 우려될 때 (계속기업가치 > 청산가치)	· 지급불능, 채무초과 ·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 (계속기업가치 < 청산가치)
절차의 관리주체	·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(예외적으로 제3자를 선임)	· 파산관재인(변호사)
채무의 변제방법	· 채무조정(면제, 유예, 출자전환)	· 재산 처분 후 권리순위에 따라 분배
절차의 종결사유	· 회생계획 수행완료	· 모든 재산분배 완료시

♣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(발간책자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발행  
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

발행인  
윤종일

주소  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
광교로 107

홈페이지  
www.gsbc.or.kr

자료문의  
평가조사실  
031-259-7365

「중소기업 포커스」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,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